

조직, 철학 및 목표
철학 및 목표
신뢰에 관한 방침

이것은 새로운 방침임.

I. 목적

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FCPS)의 학생 및 가족들이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FCPS의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FCPS를 Fairfax 카운티의 공공 신뢰 및 기밀 유지 정책과 일관되도록 조정함으로써 모든 학생 및 가족들을 위해 안전하고 환영하는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교육위원회의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II. 정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시민권은 개인이 미국 시민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포함)인지 또는 오로지 다른 국가의 시민 (“비시민권자”)인지의 여부를 나타냄. 이민 신분은 비시민권자가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받은 허가의 유형을 나타냄 (예: 합법적 영주권자, 조건부 영주권자, 비자 소지자, 임시 보호 신분 또는 허가증이 없는 (불법 체류) 신분 또는 다른 유형의 신분). 인지된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은 실제 또는 추정되는 출생지, 출신 국가, 혈통, 모국어, “외국인”처럼 보이거나 말함, 기타 출신 국가를 알 수 있는 지표 또는 사회 보장 번호 부재와 같이 개인이 비시민권자이거나 불확실한 이민 신분일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 특징을 나타냄. 이러한 인지된 특징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이라는 용어와 별개이며 이에 포함되지 않음.

행정 영장: 의심되는 이민법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미국 국토안보부 (DHS), 미국 이민 세관 단속국 (ICE) 또는 이민 행정 판사 (IJ)를 포함한 이민 집행 공무원이 발부하는 문서. 이 용어에는 민사 행정 영장, 행정 소환장, 구금 요청, 추방 명령, 데이터베이스 항목 (예: 국가 범죄 정보 센터로부터) 및 개인의 체포 또는 구금이나 정보에 대한 유사한 민사 명령이 포함됨. 행정 영장은 형사 사법 영장이 아님.

법원 명령: 이민 행정 법원을 포함하지 않은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입력한 명령.

형사 사법 영장: 연방, 주 또는 지역 형법의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개연성 있는 이유가 발견되는 경우에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 발부하는 영장.

개인 신상 정보: 공개될 경우, 일반적으로 유해하거나 사생활 침해로 간주되지 않는 학생의 교육 기록에 포함된 정보. 예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단지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별명을 포함한 이름; 공식적으로 인정된 활동 및 운동의 참여; 운동팀의 일원일 경우, 키와 몸무게; 출석 기록, 등등. “개인 신상 정보”에 대한 FCPS의 정의는 매 학년도 초에 발행하는 ‘설문조사, 기록, 교과과정, 사생활 및 관련 권리에 관한 연례 공고 및 제외 신청 양식 (제외 신청 양식

패킷)' (다음을 참조: <https://www.fcps.edu/registration/opt-out-forms>) 에서 명시됨.

직원: 여기에 정의된 FCPS 의 직원, 대리인, 대표인으로 고용되거나 FCPS 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모든 사람.

이민 세관 단속국 (ICE): 미 국토 안보부 (DHS) 산하 연방 법 집행 기관은 미국 내륙의 이민법 집행 및 이민 행정 절차에서 미국을 대표할 책임이 있음. 이러한 정의에는 ICE 의 모든 후임 기관도 포함됨.

이민 집행 공무원: 이민 세관 단속국 (ICE), 미 국토 안보부 (DHS) 및 미 법무부 (DOJ)의 대리인을 포함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 이민 집행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연방 직원 또는 대리인.

개인 식별 정보: 단독으로 또는 특정 개인과 연결되거나 연결 가능한 다른 개인 정보 또는 식별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의 시민권, 이민 신분 (귀화 증명서 또는 시민권 번호, 외국인 번호), 출신 국가, 인종, 민족, 언어 능숙도, 종교, 성적 취향, 성 정체성, 장애, 나이, 출생 장소 및 날짜; 정부 식별 신분 (운전 면허증, 지문 및 얼굴 특징과 같은 생체 데이터, 사회 보장/납세자 식별/여권/비자 번호), 학생의 학업 및 등록 기록, 의료/건강 기록을 구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 이 용어에는 비시민권자 또는 이민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을 식별, 연락 및/또는 찾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며, 또한 여기에는 가정/직장 주소, 연락 수단, 수감 석방 날짜와 같은 법 집행 정보가 포함되나 여기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님.

III. 교육위원회의 확약

1. 교육위원회는 다음을 확인함:

- A. 모든 학생은 안전하고 환영하는 환경에서 모든 자원을 이용하며 학교에 출석할 권리가 있음.
- B. 학생들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웰빙은 학교에서 성취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 C. FCPS 가족들과 학생들은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학교와 교실이 안전하고, 환영적이며, 포용적이라고 느껴야 함.

- D. 이민국 요원 또는 이민 세관 단속국 (ICE)의 활동으로 인해 안전하고 환영하는 환경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그러한 활동은 모든 학생에게 영향을 미칠 공포 분위기와 스트레스를 조성함.
- E. 모든 FCPS 장소는 학생과 가족들이 도움, 지원 및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임.
- F. FCPS 직원들은 학생과 가족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방침 2202 (등록을 위한 적격성) 및 방침 4220 (개인 파일)에 설명되어 있는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

IV. 신뢰 보호 및 향상에 대한 표준

1. 금지된 정보의 요청, 사용 또는 공개

- A.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a) 유효한 주법, 연방법 또는 규정, 사법 영장, 법원 명령, 소환장에 의해 조치가 요구되거나 (b) 개인 또는 보호자가 조치를 승인하지 않는 한, 어떠한 직원도 FCPS 의 기록을 요청, 기록,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개인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공개해서는 안 됨. 이 신뢰 방침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법과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 B. 기타 개인 식별 정보. (a) 유효한 주법, 연방법 또는 규정, 사법 영장, 법원 명령, 소환장에 의해 조치가 요구되거나; (b) 개인 또는 보호자가 조치를 승인하거나; (c) FCPS 의 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조치가 요구되고 공개가 해당 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령자에게 제한되지 않는 한, 어떠한 직원도 FCPS 기록/데이터베이스를 요청,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단체에 개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됨. 필요성에 대한 결정은 이 방침을 따르도록 수정된 해당 FCPS 방침 및 규정에 따라, 또는 이 방침의 섹션 VIII.2 에 설명되어 있는 바와 같이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에 의해 이루어짐.
- C. Fairfax 카운티 경찰국 경찰관들 (학교 지원 경관 포함)은 이민 및 관세 집행 기관의 대리인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은 일반 명령 604 및 카운티의 공공 신뢰 및 기밀 유지 정책에 명시된 개인 식별 정보에 대한 이용을 포함하여 이민 집행 또는 지원 요청에 참여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해서는 안 됨.
- D. 예외 사항. (a) 보호 또는 혜택: 학생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이 주법, 연방법, 규정에 따라 또는 국제 조약이 요구하는 보호 또는 혜택과 관련이 있는 경우, FCPS 행정인은 학부모/보호자에게 관련 보호 또는 요건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b)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인구통계학적 자료: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기본 자료가 기밀로 유지되고 허락받은 개인들의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 평가(예: 불균형 연구)에 유용한 자료(시민권 및 이민 신분 이외) 수집 및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님. 이 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FCPS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는 집계 자료의 공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됨.

- E.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근거한 차별, 위협 또는 조건 행위 금지: 학생과 직원들은 실제나 인지된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실제나 인지된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을 근거로 누군가를 차별, 협박, 강압 또는 위협해서는 안 됨. 직원들은 주법, 연방법, 규정 또는 법원 명령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실제 또는 인지된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에 따라 FCPS의 혜택, 기회 또는 서비스 제공을 조건으로 해서는 안 됨.

V. 허용되는 신분증명서

1. 직원들은 방침 및 규정 2202 (학생들의 필수 입학 증명)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학생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들, 학생의 거주지를 합리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한 주소 또는 기타 정보, 학교 등록 목적을 위한 주소 등을 수락해야 함.
2. 연방법, 주법, 규정 또는 명백한 보조금 요건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FCPS 서비스 또는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다음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들, 개인의 거주지를 합리적으로 입증하기에 충분한 주소 또는 기타 정보 등을 수락해야 함:
 - A. 주 및/또는 외국 정부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 (ID) (예: 운전 면허증, 여권 또는 영사 신분증) 또는 Fairfax 카운티의 공공 신뢰 및 기밀 유지 정책에 따라 승인된 기타 사전 승인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형식. 이러한 문서는 5년 후에 만료되지 않아야 할 수 있음.
 - B. 그러한 대체 신분증 형식을 제시한다고 하여 운전 면허증이나 주정부 발급 신분증을 제공하였을 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밀 조사를 받거나 다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됨.
 - C. 주법이나 연방법에서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직원들은 제공된 신분증 유형의 사본을 유지하거나 기록해서는 안 됨.

이 섹션은 분명한 상황에서 특정 형식의 신분증 또는 면허증을 요구하는 연방 I-9 양식 또는 유사한 연방이나 주 양식의 작성에는 적용되지 않음.

VI. 의무

1. 직원

- A. 개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 학생 및 가족 정보의 기밀을 유지하고, 관련 FCPS 방침 및 가족 교육 권리 및 사생활 보호법 (“FERPA”)에 따라서만 공개하며, 학생과 가족들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리하지 않음.

- B. 오직 규정 4220 (개인 신상 정보 및 파일의 관리 및 공개)에 따라서만 또는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만 공개하고, 모든 직원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함.
- C.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환영받는다 느끼도록 확실히 하고, 영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진하도록 함.
- D. 무료 및 할인가 급식 프로그램, 교통편, 교육 학습을 포함하나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학교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모든 학생을 공평하게 대우함.
- E. 모든 학생과 가족들이 학교를 환영하고 안전한 환경으로 인식하도록 함.
- F. 정보 또는 기록에 대한 이민 집행관이나 대리인의 모든 요청은 검토를 위해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에 회부함.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의 사전 허가 없이는 학교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바람.

2.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

- A. FCPS 방침 및 규정, 유효한 주법, 연방법 또는 규정, 사법 영장,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에 따라 모든 이민 관련 문의 및 정보 요청을 조정함.
- B.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는 유효한 주법, 연방법 또는 규정, 사법 영장, 법원 명령 또는 소환장을 준수하기 위해 이 방침에 따라 FCPS 가 제시된 요청을 준수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
- C. 오직 이민 집행관 또는 대리인이 형사 사법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학교 장소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함. 급박한 상황이 없는 한, 학교 장소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기 전에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가 반드시 영장을 검토해야 함. 교육감 및 학교기관 법률 자문 사무처가 학생과 교직원들의 정서적 그리고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은 적절한 통지와 함께 제공되어야 함.

3. 행정인

- A. 수집되거나 공개되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 기밀 정보의 유형을 식별하는 지침을 포함하기 위해 이 방침에 대한 절차를 학교 및 학교기관 전체에서 실행하고 준수하도록 확실히 함.
- B. 학교 관련 조사 및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함.
- C. 해당될 경우, 적절한 징계 조치를 활용하여 이 방침의 위반을 해결함.

- D. 학교 지원 경관 (SROs)은 범죄 수사를 실시하는 반면 일상적인 학교 징계 문제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학생 및 가족들에게 조언하고, 징계 문제에 대한 학교 관련 조사, 학교 지원 경관의 범죄 수사 및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함.

4. 학교기관 교육감 또는 지명인

- A. 이 방침의 정신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등록 학생의 신원 및 주소 확인 요건이 이민자 학생이나 가족들, 특히 학부모가 미국에 살지 않거나 더 이상 살고 있지 않고 학부모가 아닌 성인 친척과 함께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방침 및 규정 2202 를 포함한 등록 관행 및 절차를 검토해야 함.
- B. 모든 FCPS 보조금 신청서, 계약서, 양해 각서 및 보조금 지급 기관, 공급업체, 계약자, 정부 기관, 기타 단체/기관과의 계약이 학생과 가족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상황 또는 현 방침 및 기타 방침에 명시된 대로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확실히 해야 함. 갱신을 포함한 FCPS 계약은 수령인이 학부모 또는 자격이 있는 학생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학교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관련 FERPA 면제에 따라, 제공받거나 수집된 개인 식별 정보를 제 3 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함. 34 CFR § 99.31 를 참조.
- C. 모든 학생 및 가족 정보의 수집 관행, 양식 및 문서를 검토하고, 요청된 정보가 법률에 의해 요구된 것인지를 확인하거나 FCPS 의 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함. 또한, 준수에 관한 성명서를 교육위원회에게 제공하고 모든 새로운 정보의 수집 관행, 양식 및 문서에 대한 준수를 확인해야 함.
- D.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가 연방 이민국 직원에게 정보가 직간접적으로 공개될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FCPS 의 혜택 및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학생과 가족들의 역량에 해를 끼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 신상 정보”의 정의를 매년 검토해야 함.
- E. 학부모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개인 신상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기관을 포함하여 명확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제외 신청 권리에 관한 연례 공고를 검토하고, PTA (학부모-교사 협회) 및 후원 클럽과 같은 외부 기관/단체에게 회원가입을 위해 학부모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필수로 제출하게끔 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제공해야 함.
- F.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및 우편 주소와 같은 개인 식별 정보의 공개 요구 없이 가족들을 위한 시스템 전체의 보안이 철저한 통신 수단 플랫폼을 촉진하도록 테크놀로지 해결책을 모색해야 함.
- G. 모든 학생과 가족들에게 방침에 대한 적절한 서면의 통보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해야 함. 또한, 그러한 통보는 매년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제공되어야 함. 더불어, 방침, 관련 규정 및 이민자 가족에 대한 FCPS 의 확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FCPS 웹사이트에 여러 언어로 명확하게 게시되어야 함. 모든 통보는 요청 시 모든

언어로 제공되어야 함.

- H. 모든 건물 출입구 근처 외부와 중앙 사무실 입구 근처 내부에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고 방침의 목적을 여러 언어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표지판을 각 학교 및 행정 시설에 제공해야 함.
- I. 모든 직원이 자신의 의무에 따라 이 방침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이러한 교육에는 방침의 목표,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학생 및 가족의 권리 인정, “개인 신상 정보”로 공개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학생 데이터의 보호가 포함되어야 함. 교육은 모든 학교 행정인, 중앙 사무실 직원, 학교 상담교사, 보안직 직원 및 정보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행정인이 지정한 기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야 함.

법률 참조: 연방규정집 제 34 편 99 부
Fairfax 카운티 경찰국, 일반 명령 604
Fairfax 카운티, 공공 신뢰 및 기밀 유지 정책

또한, 다음과 같은 현행본을 참조:

- 방침 2202, 등록을 위한 적격성
- 방침 2701, 학생 개인 자료
- 방침 2730, 학생 정보의 기밀 유지
- 규정 2205, 무주택 (노숙/홈리스) 학생의 등록
- 규정 2701, 학생 개인 자료
- 규정 4220, 개인 신상 정보 및 파일의 관리 및 공개

방침
2022년 4월 28일에 채택

FAIRFAX 카운티 교육위원회